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국제교역질서의 변화에 따른 통관제도 종합지원 근거 마련 등〉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465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4
IV . 검토의견	4
1. 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4
2. 조문별 검토	11
가. 목적 및 정의 등 총칙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1
나. 지원의 원칙, 방법 및 절차, 범위 등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14
1) 지원의 원칙, 통관애로 접수·처리 방법 및 절차 등 (안 제5조~제8조)	14

2) 지원활동의 범위(안 제9조)	17
3) 세관 당국 간 상호협력(안 제10조)	23
다. 지원조직, 실태조사 등 보칙 사항	
(안 제11조부터 ~ 제17조까지)	26
1) 지원조직 설치·운영(안 제11조)	26
2) 실태조사, 자료제출·조사 등 보칙 사항	
(안 제12조~제17조)	2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태호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3. 13.

다. 회 부 일 : 2026. 3. 16.

II. 제안이유

최근 국제 교역질서가 복잡해지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과 비관세 장벽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관지연, 과세분쟁, 품목분류 불일치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통상정책이나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신속히 해결하기 어려우며, 통관제도·관세평가·품목분류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해외통관분쟁 대응, 한국형 세관행정 수출, 관세정보 제공, 통관절차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의 통관 관련 피해를 예방·구제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국가의 책무(안 제3조)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수출입기업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나. 지원의 기본원칙(안 제5조)

세관행정 지원 관련 사항은 공정성·투명성·실효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통관애로 사항의 접수·발굴 및 처리(안 제7조 및 제8조)

수출입기업은 해외 세관 당국의 차별적 조치·통관지연·과세오류 등으로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이의 해소를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은 국내외 창구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발굴한 애로사항을 조사·협의·중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진행상황과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세관행정 지원활동의 범위(안 제9조)

해외 세관 당국의 관세율 분석, 해외 세관 당국과 우리기업의 품목 분류 분쟁 대응,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정보 제공·컨설팅 등을 규정하여, 관세청이 체계적·다각적으로 수출입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외 세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

조)

관세청은 세관 당국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외국 세관 당국과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및 세관기술 교류 등을 통해 국제무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함.

바. 지원조직 설치 및 협의체 운영(안 제11조)

관세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 시 민간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12조 및 제13조)

관세청장은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출입기업의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 관계부처 협조 (안 제14조)

관세청장은 실태조사와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자. 과세정보 제공 및 비밀유지(안 제15조 및 제16조)

관세청장은 수출입기업의 통관 애로 등의 해소 지원을 위하여 수출입 통관자료 등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외 세관 당국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과세자료 제공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IV. 검토의견

1. 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제정안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 미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리스크 및 지역 분쟁의 동시다발적 발생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교역질서가 복잡해지고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불확실해지는 환경으로 인해 수출입기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통관·관세 등과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17개의 조문,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의 체계]

제1조(목적)	제11조(지원조직 등)
제2조(정의)	제12조(실태조사)
제3조(국가의 책무)	제13조(자료제출·조사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관계부처 등의 협조)
제5조(지원의 기본원칙)	제15조(과세정보의 제공)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시행)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제7조(통관애로 등의 해소 요청 및 발굴)	제17조(위임 및 위탁)
제8조(처리 방법 및 절차)	
제9조(지원활동의 범위)	
제10조(세관 당국 간 상호협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 등 총칙 사항	- 목적: 국제 통관환경 변화와 해외 세관 당국 조치로 인한 국민과 수출입기업 피해 예방구제, 세관 간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

구 분	주요내용
(안 제1조 ~ 제4조)	원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로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 - 정의: 통관, 통관애로, 해외통관분쟁, 품목분류, 세관상호지원협정에 대한 정의 - 국가의 책무: 수출입기업 통관 관련 애로 해소 및 통관분쟁 피해 구제, 국내외 통관제도 개선 및 통관절차 합리화 등 국가의 책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관행정 협력 및 해외통관분쟁 등 해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지원의 원칙, 방법 및 절차, 범위 등 (안 제5조 ~ 제10조)	- 지원의 기본원칙: 공정성·투명성·실효성을 확보하여 지원활동 추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 가능, 국제협약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지원활동 - 종합대책 수립·시행: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피해 구제 등 지원과 세관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 통관애로 등의 해소 요청 및 발굴: 통관애로가 있는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요청, 관세청장의 통관애로 해소 요청 접수 또는 통관애로 해소 및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자체적 발굴, 통관애로 사항 등에 대한 관세청장의 조사 실시 - 처리방법 및 절차: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의 조사·검토·조정·협의 등 조치, 국가 간 관세청장 회의 또는 국제협약체를 통한 협의, 민간전문가·협회 또는 국제 중재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조정·중재, 관계 부처에 대한 협조요청 또는 이첩 등의 방법으로 처리 및 처리 진행 상황·결과의 당사자 통보 - 지원활동의 범위: 해외 세관 당국과 우리 기업 간 분쟁 대응 지원, 사실 조사 및 법률·기술 자문 등 해외통관분쟁과 관련한 지원, 한국형 관세 제도·시스템 수출을 위한 컨설팅 및 시스템 개선 등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과 관련한 지원, 관세정보 제공 및 컨설팅과 관련한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공항·항만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등 수출입기업 물류 촉진과 관련한 지원 등 - 세관 당국 간 상호협력: 세관 당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공동 협의기구 구성·운영 등을 통한 통관절차 간소화, 세관기술 상호지원, 정보 교환 등의 협력
지원조직, 실태조사 등	- 지원조직: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운영,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

구 분	주요내용
보칙 사항 (안 제11조 ~ 제17조)	- 실태조사: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지원활동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및 이를 위한 지원활동 대상자나 관계기관, 해외 세관 당국 등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 확인 요청 등 - 자료제출·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수출입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검사 - 관계부처 등의 협조: 실태조사 및 지원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등 - 과세정보의 제공: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등 해소 지원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외 세관 당국 등 관계기관에 과세자료 제공 - 비밀유지 의무: 실태조사·지원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의 비밀 누설 및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위탁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첫째, 자유무역주의로부터 글로벌 보호무역 경향으로의 국제 교역환경 변화,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각 국가의 통관 심사 및 절차 강화에 따라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입기업이 겪는 통관애로의 해소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대기업에 비해 전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통관애로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가 기업의 존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관세·통상분쟁에 대응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지속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법률로 근거화하여 인력·예산·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¹⁾

제정안은 통관애로가 있는 기업이 관세청장에게 통관애로의 해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자체적으로도 통관애로의 해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7조),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안 제6조), 지원조직 설치(안 제11조), 관련 실태조사 실시(안 제12조) 등의 국가적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개별 기업이 현지 세관당국로부터 받게 되는 통관애로의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 간 통상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외교적·정치적 환경과 연결된 국제질서의 한 부분이자 정부 간 협상·외교가 요구되는 영역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통관 분쟁 해결 지원 외에도 국가 간 통관 프로세스의 조정 및 연결 등 국제 통상환경의 개선, 수출입기업의 통관·물류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제정안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협의기구 구성·운영 등 세관 당국 간 상호협력(안 제10조)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국내외 통관제도의 개선 및 통관절차의 합리화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안 제3조), 중

1) 2025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부록 정태호, 박수영, 최기상 위원 서면질의 (피감사기관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2025.10.21.)

합대책 수립·시행에 세관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안 제6조) 등 각국 세관 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식적·체계적 통관 및 지원 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통관 애로 해소에 대한 효과적·종합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한 관세청의 의견은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속 수출기업과 상대국 세관 당국과의 관세·통관 분쟁으로 통관 지연·추징 등 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상대국 세관 당국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협력기구에서의 상정 및 분쟁 대응 등 통관제도의 특성과 복잡성에 맞는 기술적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해 왔던바, 제정법 신설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그간 연속성·일관성이 결여되었던 지원활동 수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임. 또한, 특별법에 기반한 국가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개별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넘어 기업의 발전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각 국 세관 당국과의 협력 강화 및 국제 무역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임.

다만, 제정안 심사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별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 및 각국 세관 당국과의 협력 등에 대한 사항은 현재 관세 및 관세청 조직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항²⁾으로 보임.

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국제관세협력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국제회의의 개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 관세 당국과의 관세

현재 관세청의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통관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와 해외통관정보의 수집·전파 등의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해외통관지원센터 조직은 해외통관지원팀을 총괄로 하여 관세청장 소속 하의 관세평가분류원과 서울세관, 부산세관 등에 두고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그리고 해외 8개국에 파견한 11명의 관세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³⁾ 다만, 체계적 조직의 형태는 아니고 통관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등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구성된 민원 담당 센터의 성격으로 보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업무근거, 권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마련으로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및 해외 세관과의 국제협력 등에 있어 기존 활동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지원 활동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될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투입될 인력·비용 등 소요 자원의 측면⁴⁾을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일반법의 법체계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

행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세계관세기구 및 외국 세관 등을 통한 해외 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교환 및 관리

7. 외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세관협력회의의 운영

9.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전자문서의 유통 촉진 등 전산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원산지 조사의 기획·지휘·감독 및 원산지 검증을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9.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

4)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종합대책의 수립(제6조), 협의체 또는 위원회 등 지원조직의 구성·운영(제11조제2항), 실태조사 실시(제12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억 4,100만원(연평균 4,820만원)을 추산함. 다만,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제11조제1항)과 관련해 기존 조직을 활용할지 직제 개편을 통해 인력을 추가 활용하게 될지 예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인건비 등 비용은 추계에 포함되지 않음.

아니라면 일반법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 기본 원칙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재정경제부는 제정안의 지원사항이 단순 행정지원, 국가기관 간 협력으로서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할지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⁶⁾ 통관절차의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도 「관세법」상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입장⁷⁾임.

5)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pp.10-11, “특별법은 새로운 분야의 입법 수요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내용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들어지고 있으나, 특별법이 다수 양산되면 법체계가 혼란스러워져 법규범 상호간의 충돌과 모순으로 체계 정당성을 침해할 여지가 커진다. (중략) 입법자는 새로운 입법 수요를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엄격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고,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실효성과 적합성, 기존 법령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입법이 필요한 경우는 재정지원 근거 도입(기금신설 등), 별도 기관 설치,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 사항 규정 등이 해당

7) 「관세법」 제9장(통관) 제1절(통칙) 제6관(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의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등 총칙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 통관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해외 세관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인하여 국민과 수출입기업이 입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예방·구제하고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등 세관 간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수출상대국의 세관·통관행정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通關)”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2. “통관애로”란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겪는 관세, 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요건, 통관절차 등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말한다. 3. “해외통관분쟁”이란 해외에서 발생한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중 세관 당국 간 또는 국제기구·국제중재기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해결 절차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4. “품목분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물품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세관상호지원협정”이란 세관 당국이 관세 법규 준수, 위반행위 적발, 밀수·불법무역 방지, 무역촉진을 위해 세관 당국 간 정보 교환과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양자·다자간 국제협력 협정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제 통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입기업의 통관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통관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내외 통관제도의 개선 및 통관절차의 합리화를 통하여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관행정 협력 및 해외통관분쟁 등 해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은 제1조에서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 통관환경 변화 등에 따라 국민과 수출입기업이 입는 피해의 예방·구제, 세관 간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수출상대국의 세관·통관행정 개선 등을 수단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안 제2조는 ‘통관’, ‘통관애로’, ‘해외통관분쟁’, ‘품목분류’ 및 ‘세관상호지원협정’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음. ‘해외통관분쟁’은 세관 당국 간 또는 국제기구·국제중재기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해결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통관애로 중에서도 개별 수출입기업이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세관 당국 등의 공식적 지원 및 해결 절차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정의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대외적으로 공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해결 절차’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할 수 있다고 보임.

안 제3조는 국가의 책무로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및 통관분쟁 피해 구제(제1항), 국내외 통관제도 개선(제2항) 등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세관행정 협력이나 해외통관분쟁 등 해소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정안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세관행정 협력, 해외통관분쟁 해소 지원에 대해서는 제정안이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관세행정에 대한 기본법인 「관세법」에서 세관행정 협력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안과 기능 및 적용범위가 중첩되면서 법체계의 복잡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임.

나. 지원의 원칙, 방법 및 절차, 범위 등(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1) 지원의 원칙, 통관애로 접수·처리 방법 및 절차 등(안 제5조~제8조)

제 정 안
제5조(지원의 기본원칙) ① 제9조에 따른 지원활동(이하 “지원활동”이라 한다)은 공정성·투명성·실효성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물품의 수출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활동은 국제협약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시행) ① 관세청장은 국제 통관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피해 구제 등을 지원하고 세관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관애로 등의 해소 요청 및 발굴) ① 수출입과 관련하여 해외 세관 당국의 차별적 조치, 수출입신고 과정의 통관지연 및 과세오류, 그 밖에 세관·통관행정 상의 문제로 통관애로가 있는 기업은 관세청장에게 그 애로의 해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통관애로 등의 해소 요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1. 관세청 및 소속기관 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민원 창구 및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접수 2. 관세청 및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한 접수 3. 관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주재 관세관 또는 재외공관 민원 창구를 통한 접수 4. 수출상대국 현지 기업협의체 건의 등을 통한 해외 접수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애로 등의 해소 요청 외에도 자체적으로 통관애로의 해소 및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소 요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발굴한 통관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처리 방법 및 절차) ① 관세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발굴한 통관애로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에 의한 국내 또는 해외에

제 정 안

- 서의 조사·검토·조정·협의 등의 필요한 조치
2. 국가 간 관세청장 회의, 세계무역기구·세계관세기구 등 국제 협의체를 통한 협의
 3. 관세사 등 민간 전문가·협회 또는 국제 중재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조정·중재 등 합의
 4.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 또는 해당 부처로의 이첩
- ② 관세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통관애로 등의 해소 요청에 대하여 그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조는 지원활동이 공정성·투명성·실효성을 확보하여 추진되도록 하고 있는데(제1항), 통관애로를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제정법의 기본 목적이므로 실효성의 확보가 중요한 동시에 수출입기업 지원 등에서의 국가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하는 만큼 그 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 등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관세청에서 기존 조직 및 예산사업으로 수행하던 지원 사업이 제정안의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기본원칙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임.

같은 조 제2항은 물품의 수출입을 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우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해외세관 당국의 정책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자원의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여파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 우선

적인 지원의 원칙이 타당하다고 보임.

같은 조 제3항은 지원활동이 국제협약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6조는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피해 구제 지원과 세관 당국간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종합대책의 수립 시기, 종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안 제7조는 통관애로 사항의 파악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통관애로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해소 요청을 받아 접수하거나 조사 실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통관애로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정함.

관세청 조직 및 직무범위에 대한 현행 규정은 관세청 직무범위에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⁸⁾ 통관애로 해소를 요청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통관애로 해소 요청권을 명시하는 안 제7조는 제정안의

-
- 8)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국제관세협력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4. 국제회의의 개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 관세 당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세계관세기구 및 외국 세관 등을 통한 해외 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교환 및 관리
 - 7. 외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세관협력회의의 운영
 - 9.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 15.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17.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전자문서의 유통 촉진 등 전산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8. 원산지 조사의 기획·지휘·감독 및 원산지 검증을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19.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입법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관세청에 통관애로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법률상 보장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그간 직제규정 등에 근거해 이루어지던 관세청의 지원 활동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소 포괄적인 통관애로의 개념과 광범위한 지원활동 범위(안 제9조)에 따른 개별 기업 요청의 증가로 행정력의 과도한 소모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특히 해외 세관 당국의 조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전담부서 설치(안 제11조) 등을 통한 필요한 자원 확보 및 처리기준, 절차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행정 운영방안이 구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안 제8조는 접수되거나 발굴한 통관애로의 건에 대하여 관세청 소속 공무원 또는 관세청장 지정 전문인력의 조사·검토 등을 포함한 처리 방법을 나열하고 해당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의 당사자 대상 통보 등을 명시함.

2) 지원활동의 범위(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지원활동의 범위)	① 관세청장은 통관애로 등의 해소를 위한 세관·통관행정

제 정 안

지원 및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외통관분쟁 관련

- 가. 해외 세관 당국과 우리 기업의 관세·통관절차·원산지·품목분류 분쟁 대응 지원
- 나. 가목의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사실 조사 및 법률·기술 자문
- 다. 「관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공인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기업이 상호주의에 따라 수출상대국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정되어 세관행정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지원
- 라. 수출상대국 세관 당국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속한 대응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 마. 그 밖에 해외통관분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지원

2.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 관련

- 가. 한국형 관세 제도·시스템 수출을 위한 컨설팅 및 시스템 개선
- 나. 국가 간 원산지 증명서 교환 방식의 간소화·표준화
- 다. 해외 세관 당국의 통관환경 현대화 지원
- 라. 그 밖에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지원

3. 관세정보 제공 및 컨설팅 관련

- 가. 수출상대국 품목분류와 우리나라 품목분류의 연계표 작성·제공
- 나. 국가별 관세율·통관제도·관세동향 등의 정보 제공, 기업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 다. 해외시장 개척·진출을 위한 품목별 수출동향 등 통계 정보 제공
- 라. 기업의 성실한 납세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신고 도움 정보 제공
- 마. 그 밖에 관세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수출입기업 물류 촉진 관련

- 가.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통관절차 등 간소화
- 나. 공항·항만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 다. 그 밖에 수출입기업 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세관·통관행정 지원 및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활동의 범위를 해외통관분쟁 관련,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 관련, 관세정보 제공 및 컨설팅 관련, 수출입기업 물류 촉진 관련,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범위와 관련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가) 해외통관분쟁 관련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제1호의 해외통관분쟁 관련 지원활동은 개별 기업의 통관애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지원임.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 통계는 2024년까지 매년 150건 정도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관련 건이 2023년 기준 75%를 차지함.

[해외 통관애로 건수: 국가, 연도별 (2022-2025년)]

구분	중국	홍콩	미국	베트남	인도	태국	EU	인도	일본	기타	합계
'22	12	1	1	26	26	6	3	63	4	8	150
'23	30	4	1	34	27	9	2	34	1	9	151
'24	9	3	1	15	40	3	1	75	-	4	151
'25	6	-	-	26	31	6	4	48	-	1	122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2026.4.

[해외 통관애로 건수: 유형별 (2023년)]

구분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통관절차 등 관련 애로	품목분류 분쟁	기타	총계
건수 (비율)	113건 (75%)	27건 (18%)	9건 (6%)	2건 (1%)	151건 (100%)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수출기업 통관애로 해소 위해 관세외교 역량 집중」, 2024.1.

우선, 원산지증명서 불인정과 관련된 애로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의 FTA 활용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한국·인도 또는 한국·아세안 국가 FTA에 따라 수출 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원산지증명서상 오류 등을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이 거절되는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원산지증명서 활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구축을 통해 관세 당국 간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통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서류 오기 발생 시 신속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운영 중임.

다음으로, 품목분류 분쟁과 관련된 애로는 발생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발생 시 수출입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애로 유형으로, 수출입 물품이 어느 품목 분류(HS 코드)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 유무가 결정되고 품목 분류 오류가 있을 경우 다량의 관세 추징 등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수반될 수 있음. 현재 관세청은 품목분류 분쟁과 관련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품목분류 대응논리 제공을 통한 컨설팅, 세계관세기구(WCO) 의제 상정, 분쟁 관세당국과의 적극 교섭 등을 수행 중으로,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품목분류 분쟁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HS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연도별 HS 국제분쟁 지원 현황]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건/ 금액	5건/ 18억원	4건/ 109억원	14건/ 568억원	5건/ 8,143억원	5건/ 273억원	4건/ 1,054억원	4건/ 48억원
성공건/ 금액	5건/ 14억원	5건/ 40억원	3건/ 93억원	3건/ 9억원	2건/ 1억원	3건/ 168억원	2건/ 8,180억원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2026.4.

제정안의 지원활동 범위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 또는 품목분류 분쟁 대응 지원, 관련 사실 조사 및 법률·기술 자문과 함께 국가 간 원산지 증명서 교환 방식의 간소화·표준화, 수출상대국 품목 분류와 우리나라 품목분류의 연계표 작성·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음.

제정안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수출상대국 상호 인정 및 세관행정상 혜택 부여를 위한 지원과 관련해, 관세청에서는 AEO 상호 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추진함으로써 수입검사를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신속통관 혜택 제공 및 상대국 세관에서의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AEO MRA 체결 현황 (총 25개국, 2026. 3월)]

구 분	전면이행 (21개국)	전면이행 준비 (4개국)
국가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인도,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캐나다, 태국, UAE, 뉴질랜드, 이스라엘, 페루, 도미니카(공),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
수출액 (비중)	1,630억불 (74.1%)	200억불 (9.1%)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2026.4.

나)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 관련 (제9조 제1항 제2호)

관세청은 자체 ODA 예산을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 컨설팅 사업과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를 통해 전자정부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개도국과의 우호적 통관 환경을 조성하여 국제 외교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개도국의 후속사업 유도 및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통한 외화 획득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와 관련된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을 지원범위로 명시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을 위한 국제 통관환경 개선 및 관련 제도·시스템 수출에 따른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다) 관세정보 제공 및 컨설팅, 수출입기업 물류 촉진 등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 및 잦은 변경, 중동 정세 불안 등 통상환경 급변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은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 등의 작성·제공,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수행 등 필요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수출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3) 세관 당국 간 상호협력(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세관 당국 간 상호협력) ① 관세청장은 지원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 당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상대국의 세관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대국의 세관 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1. 통관절차의 간소화 2. 세관기술의 상호지원 3.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4. 그 밖에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 제10조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세관 당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상호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개별 수출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통관애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국가 간 법제 및 세관행정 운영상의 차이에 따라 통관애로가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세관 당국 간 상호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2026년 4월 현재 우리나라는 39개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고 있음.⁹⁾ 재정경제부는 「관세법」에 통관 등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

9) 정부간 협정 26개국, 기관간 협정 13개국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현황]

구분	아시아·태평양	유럽·유라시아	북미·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체결 (39)	12개국	11개국	7개국	9개

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¹⁰⁾ 별도 특별법의 제정에 신중한 입장인 반면, 관세청에서는 현재 인력이나 자원의 부족으로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충실하게 운영·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협의기구 구성과 세관 당국 간 협력에 대한 근

호주('88), 뉴질랜드('92), 몽골('93), 중국('94), 베트남('95), 인나('96), 홍콩('97), 태국('99), 말련('00), 필리핀('01), 일본('04), 인도('06), 캄보디아('23)	러시아('92), EU('97), 폴란드('99), 우즈베크('99), 우크라이나('03), 네덜란드('07), 터키('10), 카작('13), 아제르바이잔('18), 스페인('21), 영국('23)	캐나다('86), 미국('86), 멕시코('05), 칠레('05), 아르헨티나('10), 우루과이('16), 페루('22)	이스라엘('96), 탄자니아('09), 알제리('13), 사우디('14), UAE('15), 이란('16), 쿠웨이트('19), 튀니지('21), 이집트('23)
--	--	--	---

주: 밑줄 표시는 정부간 협정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2026.4.

10) 「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형사소추 및 수출입신고의 검증을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과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와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교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거가 마련되고 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운영(안 제11조)이 이루어지면 세관 당국 간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 및 대외 신뢰도 제고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국가 간 협정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대외적 권한이므로 세관상호협정의 실무적인 체결 담당자가 관세청이라고 하더라도 조문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는 주체를 관세청장이 아닌 정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다. 지원조직, 실태조사 등 보칙 사항(안 제11조부터 ~ 제17조까지)

1) 지원조직 설치·운영(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지원조직 등) ① 관세청장은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1조는 지원활동의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및 관계기관·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

현재 통관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등을 위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해외통관지원센터는 관세청과 각 세관 내 여러 팀·센터 및 해외 관세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의 통일성, 지원의 체계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통관애로 해소와 통관분쟁 피해 구제,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 등 제정안에 따른 지원활동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일반적으로 전담부서의 구성에 관련된 내용은 특정 업무의 집행을 위한 내부 운영사항에 속하므로 법률보다는 관계 기관 직제인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지원활동의 범위(안 제9조)와 관련 절차, 방법(안 제8조) 등을 규정하고 이를 전담할 부서 및 관련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한 근거도 명시적으로 같이 규정함.

2) 실태조사, 자료제출·조사 등 보칙 사항(안 제12조~제17조)

제 정 안
제12조(실태조사) ① 관세청장은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활동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활동의 대상자, 관계기관 또는 해외 세관 당국 등에 대하여 자료 수집을 하거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지원활동의 대상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문서·전자기록 등의 제출 요구 2. 지원활동 대상 기업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청취 3. 해외 세관 당국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 ③ 실태조사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료제출·조사 등) ① 관세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기업의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장부·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부처 등의 협조) ① 관세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정 안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조치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과세정보의 제공) 관세청장은 수출입기업의 통관 애로 등의 해소 지원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자료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외 세관 당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며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이 법에 따른 실태조사·지원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조, 비밀유지 의무 등 특별법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부분으로, 다른 입법례에 많이 포함되는 사항임.

안 제12조는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활동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료 수집이나 사실 확인 요청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방법을 나열함. 해당 조문 제1항의 후단은 같은 조문 제2항인 실태조사의 방법에 포함된 내용이 중복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여 제1항 후단을 삭제해도 될 것으로 보임.

안 제13조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검사 등 행정조사에 대한 근거와 그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4조는 관세청장이 실태조사, 지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 등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는 수출입기업의 통관 애로 등 해소 지원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자료 등의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해당 조문 후단의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며’ 문구는 문맥에 맞지 않아 표지부의 ‘주요내용’에 쓰여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문구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외 세관 당국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인데, 「관세법」 제116조¹¹⁾에서는 해당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는데 안 제15조는 「관세법」 제116조에서 단서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

11)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법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 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라. 그 밖에 급부·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2항 이후 생략)

지 않아 「관세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임.

안 제16조는 실태조사·지원활동의 종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금지 의무의 실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안 제17조는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위임·위탁의 일반적인 입법례는 권한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므로 ‘관세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